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 모집 공고

말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한국마사회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공모직위 및 인원 : 상임감사위원 1명

임 기 : 2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자격요건 (붙임#2 : 자격요건 및 결격사항 관련 규정 참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추신 분
-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및 말산업 육성을 통하여 축산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 할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보유하신 분
- 책임감, 청렴성, 준법성 등 투철한 직업윤리 의식을 갖추신 분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및 한국마사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신 분

결격사항 (붙임#2 : 자격요건 및 결격사항 관련 규정 참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한국마사회법」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제출서류 (붙임#3 : 제출서류 양식 참조)

- ① 지원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칼라 증명사진 필수)
- ② 자기소개서 1부
-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⑤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부 (충족사항 관련 세부증빙 제출 필수)
- ⑥ 경력기관 현황자료 1부
- ⑦ 증빙자료 일체 (학력, 경력, 자격·면허·어학, 논문·저서, 포상 등)

□ 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5. 12. 9.(화) 공고 시 ~ ‘25. 12. 23.(화) 16: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이메일(recruit2@kra.co.kr) 접수**
 - * 등기우편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정함(소인분 아님), 일반우편 불가
 - * 이메일 제출 : 자필서명 후 PDF형식의 1개 파일로 제출(용량이 클 경우 최대 2개)
 - *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12/23(화)) 및 마감시간(16시) 내 서류가 도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발송하시기 바라며, 도착여부 유선확인 필수(☎02-509-1174)
- 접수처 : (우 : 13822)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한국마사회 본관)
한국마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인재개발부)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26. 1. 4.(일) 예정)
-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기타사항

- 한국마사회는 업의 특성상 수~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월 · 화 휴무)
- 응모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외비밀이 유지됩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청구대상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지원 서류(이메일 제출본은 반환X)
 - * 청구기간 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예정
-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등에 따라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수립 · 이행하고 있으며, 여성임원 선임을 통한 균형 있는 이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02-509-1174**)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마사회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kra.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상임감사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항 관련 규정

I 자격요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상임감사 위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 감사 자격요건 세부기준은 6페이지 “[별첨] 감사 자격요건 세부기준” 필수 참조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이란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 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③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2. 한국마사회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및 별표1

제11조(직무수행요건) ① 임원 직무수행요건은 임원 직위에 요구되는 자격요건, 필요역량 등으로 이루어지고 응모자 또는 추천된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직무수행요건 (제11조 관련)

□ 공통 자격요건

구 분	요 건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마주가 아닌 자
학력 및 전공	- 특별한 학력제한 없음 - 법적인 의견 겸비와 시장경제원리 이해를 위해 법학, 경제학, 경영학 분야와 마사회 설립목적인 말산업과 축산발전을 위해 농·축산학 분야 전공자 우대
그 밖의 사항	-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간 경마교류를 위해 외국어 구사가능한 자 우대 - 경마를 포함한 레저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자 - 그 밖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직위별 자격요건

구 분	요 건
상임 감사 위원	1.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 4. 경영혁신의지, 대국민 봉사정신과 관련한 소양과 역량

II 결격사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⑦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제3항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 제8항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④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 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 ·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 ·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3항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한국마사회법 제29조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별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이하 각 호 생략)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별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별첨] 감사 자격요건 세부기준

가 감사 자격요건 주요사항

1) “감사 관련 업무”

- “감사 관련 업무”란 협의의 감사업무뿐 아니라,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감사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업무도 포함
-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기관 직제상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자 또는 부서의장을 의미

2) 자격요건 충족 기준

- 공운법 제30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온전히 충족해야 하며, 각 호 간의 개별 근무경력 합산은 불가
 - ☞ (예시) 공공기관 감사 경력 2년(3호 해당) + 공무원 감사 경력 1년(4호 해당)
→ 각 호 간 합산 불가로 경력 인정 불가
 - 단, 공운법 각 호 내에서의 감사 관련 경력은 합산은 가능
 - ☞ (예시) 공공기관 감사 경력 2년(3호 해당) + 주권상장법인 감사 경력 1년(3호 해당)
→ 제3호에 따른 감사 경력 3년 인정 가능

3) 경력 계산

- 경력은 달력(月曆)에 따라 연·월 단위로 계산
 - 2개 이상의 경력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 일(日) 단위까지 계산하되, 12개 월은 1년, 30일은 1개월로 봄

4) 비상근직 경력

□ 시간제 근무 등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예시) OO공공기관에서 주3일 근로 형태로 5년 근무한 후보자
: 3년 경력 인정 [5년 × (3일/5일) = 3년]

□ 근무시간 계산이 어려운 사외이사, 프리랜서 등은 업무특성·난이도, 재임기간, 업무실적 등을 고려해 경력 일부(전부) 인정 가능

나 각 호(1~5호)에 따른 감사 자격요건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상임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1호)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인회계사,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요건상 국내 자격증*을 의미

* 외국공인회계사, 외국변호사는 불인정

- (회계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기간은 자격요건에 산입 가능

* 【관련법령】 공인회계사법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변호사) 사법연수원 연수기간은 자격요건에 산입 가능하나, 로스쿨 전문석사 기간은 자격증 취득 전으로 경력 불인정

* 【관련법령】 변호사법 및 변호사시험법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사례1)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 2년, 실무수습 후 1년 근무한 지원자 → 제1호 자격요건 충족

(사례2) 미국 ○○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국내 △△법무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 한 지원자 → 제1호 자격요건 미충족

☞ 다만, 이 경우 감사 관련 분야 경력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제2호~제5호의 경력요건에 부합하는지 추가 검토 필요

(2호)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5호 규정에 따른 학교는 ①대학, ②산업대학, ③교육대학, ④전문대학, ⑤원격대학을 의미

*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학교목록은 교육부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의 「학교 개황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

-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제30조)과 「고등교육법」 외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교는 미포함

- 폴리텍 대학, 농수산대학, 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등은 미인정

- “조교수 이상”이란 조교수,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을 의미

- 고등교육법 개정('11년) 前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현행 ‘조교수’에 해당하므로, 同 경력도 자격요건으로 산입 가능
- 시간강사·겸임교수·초빙교수 등 비상근 교원은 불인정
 - 다만, 해당 경력이 다른 조항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추가 검토 필요
 - 다른 조항에 따라 비상근교원 경력이 인정될 경우, 경력은 수업 시수 등에 비례^{*}하여 재직기간 산정

* 대학별 전임교원의 수업시수 기준(통상 1주 9h)으로 판단

☞ (예시) A대학에서 3년간 주간 3h 강의 + B대학에서 2년간 주간 6h 강의시,
→ 자격요건(2.3년) = 1년 (A대학 3년 × 3h/9h) + 1.3년 (B대학 2년 × 6h/9h)

* **【관련법령】 고등교육법(2011.7.21.)**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부칙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사례1) ◎◎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 10년 재직한 경우 **제2호 자격요건 충족**

(사례2) ○○대학교 전자공학과 부교수로 5년 재직한 사람이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한 경우

☞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으나, 전자공학부는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가 아니므로 제2호 자격요건 미충족**

[3호]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공공기관, 연구기관,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고시한 공공기관(‘20년 기준 340개)을 의미
 - ☞ 공공기관 목록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에서 확인
 - 인정자격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 재직한 경력에 대해서만 자격요건으로 산입 가능
- “**주권상장법인**”이란 ①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또는 ②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의미
 - * 주권상장법인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서 주권이 거래되므로, 금융감독원 DART(<http://dart.fss.or.kr/>)에서 해당법인의 상장여부 확인 가능
- “**연구기관**”이란 일정한 연구인력·시설·조직을 갖추고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
 - 다만, 공운법상 규모·성격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임추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
 - ‘**공공 연구기관**’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이 출연 또는 보조하는 연구기관으로 특정 가능하나,
 - * 정부출연기관법, 과기출연기관법, 지방연구원법 등
 - ‘**민간 연구기관**’은 기관의 설립목적, 인력·조직, 실제 수행하는 사업내용,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종목), 금감원 공시정보(외부감사 의무법인에 한함) 등에 연구개발업으로 등록한 기관인지 보충적으로 확인

(사례) 공공기관 상임감사 2년 재직, 국회의원 보좌관(4급상당) 1년 2개월 재직한 사람

☞ 각 호간 경력*은 합산이 불가하므로, 제3호에 따른 감사 경력(3년) 미충족

* ○○공사 감사 경력 : 제3호 해당 / 국회의원 보좌관 재직 경력 : 제4호 해당

- “부서책임자”란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소속직원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 사람을 의미
 - 반드시 감사 관련 분야 부서의 책임자일 필요는 없고, 최종 경력 등이 부서책임자 이상에 해당하면 자격요건 인정 가능
 - 부서 책임자 경력과 감사 관련 업무경력이 서로 다른 기관(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충족되어도 자격요건 인정

(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 국가, 지자체 범위

- '국가'는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헌법기관** 등 국가기관 모두 포함

* 행정각부(부·처·청) 외 정부위원회, 국정원,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

**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통, 헌법재판소 등

-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 및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 포함

*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상 지자체와 교육청을 말함

- 소속기관(인재개발원 등)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국토관리청 등) 등 도 행정각부·지자체 등에 소속되어 소관사무나 관할지역의 행정사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포함됨

* 소속기관 등 여부는 행정각부 직제 및 시행규칙(중앙행정기관), 각 지자체별 행정기구 설치 조례(지자체) 등 참고

2) 5급 상당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5급을 기준으로, 이에 상당하는 경력은 「공무원 임용규칙」(인사처 예규)등을 참고하여 판단

< 공무원 경력 상당 계급 기준표 예시 (별표1) >

일반직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경 찰	총 경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소 령	대 위	중 위	소위·준위	원사·상사·중사	하 사
대학교원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	-
초·중등교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	-
판사·검사	4-2호봉	-	-	-	-	-
전문임기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 부서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최종 경력이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면 되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지방의회의원은 자치단체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예산·회계 감사 등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해당

(5호)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1) 공공기관 업무 관련 경력

- 임명 예정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인지는 기관설립법, 정관, 직제·업무분장 등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업무 관련 경력은 동일 기관 내에서 충족될 필요는 없으며, 서로 다른 기관의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경력 요건 충족 가능

2) 감사 업무 관련 경력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동일
- “**법인**”이란 공법인과 사법인, 재단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사단법인 등 형태에 관계없이 법인설립 등기를 한 모든 법인 의미
 - * 법인 여부는 법원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 받는 단체를 의미
 - ☞ 비영리단체 목록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https://npas.mois.go.kr>)에서 조회 가능

- 지원자의 민간단체 경력 중에서 동법에 따라 지원받지 않은 기간의 경력을 제외

- * **【관련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정당”이란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을 의미**

- * 정당 목록은 중앙선관위(<https://www.nec.go.kr>)에서 확인 가능

- 「정당법」 상 정당설립이 선관위에 등록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

- * 중앙당이 아닌 시·도당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 가능

(사례1) ○○기관 정책기획팀장 3년 재직, △△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10년 재직자가 의료분야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감사 관련 업무 경력(정책기획팀장 3년)과 관장사무 경력(보건대학원 교수 10년)을 모두 갖춰 **제5호 자격요건 충족**

(사례2) ○○산림자원학과 교수로 10년 재직한 사람이 국립공원공단에 지원

☞ 공단 업무 관련 경력은 인정되나, 감사 경력이 없어 **제5호 자격요건 미충족**

참고1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세부 자격요건 판단기준 4~14페이지 필수 참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1호부터 5호 각 호 내에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조항과 관련된 일체의 경력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조항	내용	충족여부 (O,X로 표시)
1호	회계사/변호사	
	<u>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자격</u> 이 있습니까?	
	<u>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u> 하였습니까? - 자격과 관련된 업무 : 회계, 세무대리 및 부대업무(회계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일반 법률 사무(변호사)	
2호	대학 감사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u>대학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u> 에서 <u>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u> 하였습니까? ※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u>요건 충족을 증명</u> 할 수 있는 <u>근무부서, 근무부서별 근무기간·담당업무·직위 등이 포함된 형태의 "상세 경력증명서"</u> 또는 <u>"상세 재직증명서"</u> 를 제출하여야 하며 <u>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u>	
3호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의 감사 관련 업무 경력자	
	<u>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u> 하였습니까?	
	<u>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부서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u> 이 있습니까? ※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부서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근무" <u>요건 충족을 증명</u> 할 수 있는 <u>근무부서, 근무부서별 근무기간·담당업무·직위 등이 포함된 형태의 "상세 경력증명서"</u> 또는 <u>"상세 재직증명서"</u> 를 제출하여야 하며 <u>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 관련 업무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에서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연구기관 : 일정한 연구인력·시설·조직을 갖추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부서책임자 : 정식직제 부서의 장(팀장, 부장 등)으로 인사권과 예산집행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관련 업무 경력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u>감사 관련 업무</u> 를 <u>3년 이상 담당</u> 하였습니까?	
	<u>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u>	
4호		<p>※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u>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 근무부서별 근무기간·담당업무·직위 등이 포함된 형태의 "상세 경력증명서" 또는 "상세 재직증명서"를 제출</u>하여야 하며 <u>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 -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급,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5호		<p>기관의 관장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p> <p><u>임명 예정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u>에서 <u>5년 이상 근무한 경력</u>이 있습니까?</p> <p>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정당에서 <u>감사 관련 업무</u>를 <u>1년 이상 담당</u>하였습니까?</p> <p>※ "지원한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 <u>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 근무부서별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등이 포함된 형태의 "상세 경력증명서" 또는 "상세 재직증명서"를 제출</u>하여야 하며 <u>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 : 기관의 설립목적, 정관,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판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법인 : 대한민국 법원에 법인등기가 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 정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참고2

대학 유형별 설립근거

구분	근거법령	학교구분	학교 수	인정여부*
고등 교육 법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교	186	○
		산업대학	2	○
		교육대학	10	○
		전문대학	135	○
		방송통신대학	1	○
		사이버대학	19	○
		기술대학	1	×
		각종학교	2	×
	고등교육법(제30조)	대학원대학	42	×
소계			398	-
그 밖에 다른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9	×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제1조)	한국농수산대학	1	×
	한국과학기술원법(제1조)	한국과학기술원	1	×
	광주과학기술원법(제1조)	광주과학기술원	1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
	울산과학기술원법(제1조)	울산과학기술원	1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제6조)	한국학대학원	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	×
	암관리법(제29조)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 대학교	1	×
소계			18	-
합계			416	-

* 공운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인정하는 학교인지 여부

참고3**5급 상당 공무원 사례**

1.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의 5급 이상 직급
2. 대통령비서실 직제 [별표]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의 사무관 이상 직급
3.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계급환산기준표의 경정 이상 계급
4.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계급환산기준표의 소방령 이상 계급
5.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12]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표의 5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직무 등급
6.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직급표의 연구관 및 지도관
7. 감사원사무처 직제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의 부감사관 또는 5급 이상 직급
8. 국회사무처 직제 [별표 1] 국회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의 5급 이상 직급
9.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별표] 법원공무원정원표의 사무관(5급) 이상 직급
10.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1의 2] 연구직공무원 직급표의 기록 연구관 이상 직급
11.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1의 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의 가등급(전문경력관 가군)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 공모 제출서류

<제출순서>

< 모든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로 한글 정자 서명(홀림체나 영문 서명X) 필수 >

1. 지원서 (컴퓨터로 작성할 것)
2. 자기소개서 (컴퓨터로 작성할 것)
3. 직무수행계획서 (컴퓨터로 작성할 것)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6. 경력기관 현황자료 (컴퓨터로 작성할 것)
7. 증빙자료
 - 학력관련 증빙자료(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 지원서 기재순
 - 경력관련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지원서 기재순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항에 따른 “감사 후보자 자격요건” 中 총족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증빙서류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등”이 포함된 “상세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증빙 제출 불가 시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추천 제외 가능
 - ※ “[붙임2] 자격요건 및 결격사항” 내 ‘세부 자격요건 판단기준’ 필수 참조
 - 기타 증빙자료(자격·면허·어학, 논문·저서, 포상 등)
 - ※ 논문 및 저서 등은 전체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논문초록 또는 저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적의 표지 등을 제출하면 됨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첨부#3-1】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	응모번호	※ 기재 불요
--------	--------------	------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본적지)	※ 기본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록기준지 기입			
	전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E-mail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전공	소재지	학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학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병역사항	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input type="checkbox"/> 병역특례, <input type="checkbox"/> 면제 (면제시 사유 : _____)				
	군별	예)육군	계급	예)병장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류	취득년월일	어학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경력사항 (최근 경력을 맨 윗줄에 기입) (※ 기재한 경력에 대한 상세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근무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예) '20.03.01 ~ 현재 예) '20.19.01 ~ '21.03.05 (년,월,일까지 기재) (경력 종료시점 필수기재)	
				~	
				~	
				~	
				~	

관련분야 논문발표 (중요도, 기관업무 연관성 높은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사항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기관업무 연관성 높은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 (중요도, 기관업무 연관성 높은 순 작성)

-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 (중요도, 기관업무 연관성 높은 순 작성)

- 포상실적 (중요도, 기관업무 연관성 높은 순 작성)

As a result,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been infected with the virus has increased rapidly, and the disease has spread t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declared the COVID-19 pandemic a global emergency, and governments and health organizations are working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and provide medical care to those affected.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첨부#3-2】

자 기 소 개 서

- ※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5매 내외)
- ※ 작성기준 : 컴퓨터로 작성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5포인트)

【첨부#3-3】

직무수행계획서

-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기관 발전을 위한 제언 등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5매 내외)

- ※ 작성기준 : 컴퓨터로 작성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5포인트)

【첨부#3-4】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로 한글 정자 서명(홀림체나 영문 서명X)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인사담당기관 및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며, 해당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이 원활한 인사검증의 진행을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관리, 보유기간, 유의사항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귀하가 지원한 임원 직위에의 인사검증 목적으로만 해당 선임기간(원서제출일~인사발령일)까지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됩니다.
- 인사검증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집·제공 가능한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사검증을 시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으로의 임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공공기관 임원 인사담당기관장 귀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	(자필서명)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민감정보(범죄경력 등) 처리 동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개인정보의 제3자(개인정보 보유 기관) 제공 동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제공 가능한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	
• 병적자료 병무청	• 재산등록자료 인사혁신처 등 각 관할기관
• 범죄경력 등 자료 경찰청, 검찰청, 국가기록원	•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 기족관계등록부, 舊호적 행정안전부, 지자체, 법원	•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 국민연금공단
• 감사 및 징계전력자료 감사원, 각 관할기관	• 출입국 및 국적자료 법무부
• 부동산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법원	• 정치자금기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소득 및 납세자료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 쌀소득직불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각종 인·허가 자료 해당 인·허가 관청

【첨부#3-5】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로 한글 정자 서명(홀림체나 영문 서명X)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관련)

※ "[불임2] 자격요건 및 결격사항" 내 '세부 자격요건 판단기준' 필수 참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1호부터 5호 각 호 내에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조항과 관련된 일체의 경력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조항	내용	충족여부
1호	회계사/변호사 (모두 충족해야함) <u>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까?</u>	O / X
	<u>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습니까?</u>	O / X
	- 자격과 관련된 업무 : 회계, 세무대리 및 부대업무(회계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일반 법률 사무(변호사)	
	대학 감사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모두 충족해야함) 대학에서 <u>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u> 에서 <u>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습니까?</u>	O / X
2호	※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u>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 근무부서별 근무기간·담당업무·직위 등이 포함된 형태의 "상세 경력증명서"</u> 또는 "상세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u>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u> -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포함, 기술대학과 학교 제외 -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법학, 회계학, 감사행정학, 경영학(재무관리 등) 등 - 조교수 이상 : 조교수,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의 감사 관련 업무 경력자 (모두 충족해야함)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u>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습니까?</u>	O / X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u>부서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u>	O / X
	※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부서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근무" <u>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 근무부서별 근무기간·담당업무·직위 등이 포함된 형태의 "상세 경력증명서"</u> 또는 "상세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u>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u> - 감사 관련 업무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에서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 연구기관 : 일정한 연구인력·시설·조직을 갖추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부서책임자 : 정식직제 부서의 장(팀장, 부장 등)으로 인사권과 예산집행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관련 업무 경력 공무원 (모두 충족해야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u>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u> 하였습니까?	O / X
	<u>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u> 경력이 있습니까?	O / X
4호	<p>※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u>요건 충족을 증명</u>할 수 있는 <u>근무부서, 근무부서별 근무기간·담당업무·직위 등이 포함된 형태의 "상세 경력증명서"</u> 또는 "<u>상세 재직증명서</u>"를 제출하여야 하며 <u>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 -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급,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기관의 관장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모두 충족해야함)	
	임명 예정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u>5년 이상 근무한 경력</u> 이 있습니까?	O / X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정당에서 <u>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u> 하였습니까?	O / X
5호	<p>※ "지원한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 <u>요건 충족을 증명</u>할 수 있는 <u>근무부서, 근무부서별 근무기간·담당업무·직위 등이 포함된 형태의 "상세 경력증명서"</u> 또는 "<u>상세 재직증명서</u>"를 제출하여야 하며 <u>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 : 기관의 설립목적, 정관,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판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법인 : 대한민국 법원에 법인등기가 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 정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충족여부 요약 (직접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충족여부 : EX) 1호 및 2호 충족 - 자격충족 세부내용 : EX) 공인회계사로서 XX회계법인에서 5년간 근무하였으며(1호 충족), XX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10년간 재직하며 재무관리·회계학 등을 강의하였음(2호 충족) 	

상기의 표기 및 기재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첨부#3-6】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기관 현황자료

지원자 경력기관 현황자료

- ※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은 필수로 작성(잘 알려진 대규모 기관은 작성 불요)
- ※ 정보가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 '확인불가' 표시

(1) 00사무소

- 설립 : 0000년 00월 00일
- 대표자 : ○○○
- 주요사업 : 전기 · 전자 물품의 생산, 판매
- 자본금 : 000억 원
- 전년도('24년) 매출액 : 000억 원
- 직원 수 : 0,000명
- 한국마사회와의 업무연관성 여부 : 해당없음 or 해당있음 中 택 1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별도 검토자료 제출 必 (별도 양식 없음)

(2) 00회

- 설립 : 0000년 00월 00일
- 대표자 : ○○○
- 주요사업 : 전기 · 전자 물품의 생산, 판매
- 자본금 : 000억 원
- 전년도('24년) 매출액 : 000억 원
- 직원 수 : 0,000명
- 한국마사회와의 업무연관성 여부 : 해당없음 or 해당있음 中 택 1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별도 검토자료 제출 必 (별도 양식 없음)

【첨부#3-7】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증빙자료(표지)

구분	세부내용	
학력증빙 ※ 각 학위별 증빙 모두 제출 (학사, 석사, 박사 각각 기재한 순서대로 증빙 제출)	대학졸업증명서	OO대학교 OO과
	석사학위증명서	OO대학교 OO대학원 정치학석사
	박사학위증명서	OO대학교 OO대학원 정치학박사
경력증빙 ※ 지원서 상 경력사항에 기재한 모든 내역에 대해 순서대로 증빙 제출	재직or경력증명서	정부부처, OOO공기업 · 준정부기관 ※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등을 확인가능 해야함
	재직or경력증명서	(주) OO전자 ※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등을 확인가능 해야함
	재직or경력증명서	OOOO사 ※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등을 확인가능 해야함
기타증빙 (각각 기재한 순서대로 증빙 제출)	자격 · 면허 · 어학	자격 · 면허 · 어학 증빙
	논문 · 저서	논문 · 저서명 ※ 논문 및 저서 등은 전체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논문초록 또는 저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적의 표지 등을 제출하면 됨 (다수인 경우 엑셀자료 제출가능)
	포상	상장, 표창장 등
	기타	이외의 증빙자료